

서울특별시의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1568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12월 7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가 새로 출범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‘서울특별시의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’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며,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날(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의장에게 제출한 날)까지로 한다.
- 다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포함한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

2. 제안이유

- ‘서울특별시의회’(이하 “시의회”)와 ‘서울특별시’(이하 “시”) 는 시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「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협약」을 체결한 바 있으며(2015.8.17), 설립예정인 시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개최를 위해 동 협약을 개정하였음(2016. 11.10)
- 동 협약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공기업 사장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여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고, 시의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며,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토록 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최근 진행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사장 임용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사장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‘서울특별시의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’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37조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타 사항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- 지난 2015년 8월 17일, ‘서울특별시의회’와 ‘서울특별시’는 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「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협약」(이하 “협약”)을 체결한 바 있으며, 설립 예정인 시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동 협약을 개정한 바 있음.(2016년 11월 10일)
- 동 협약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공기업 사장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여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고, 시의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며,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토록 하고 있음.
- 이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사장 임용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‘서울특별시의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’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.

2016. 12. 7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